

2021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

2 0 2 1

공공재정
환수법
설명회

C O N T E N T S

I.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01
II.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77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III.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115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I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II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III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환수·제재부기금·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I

2020. 1.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



“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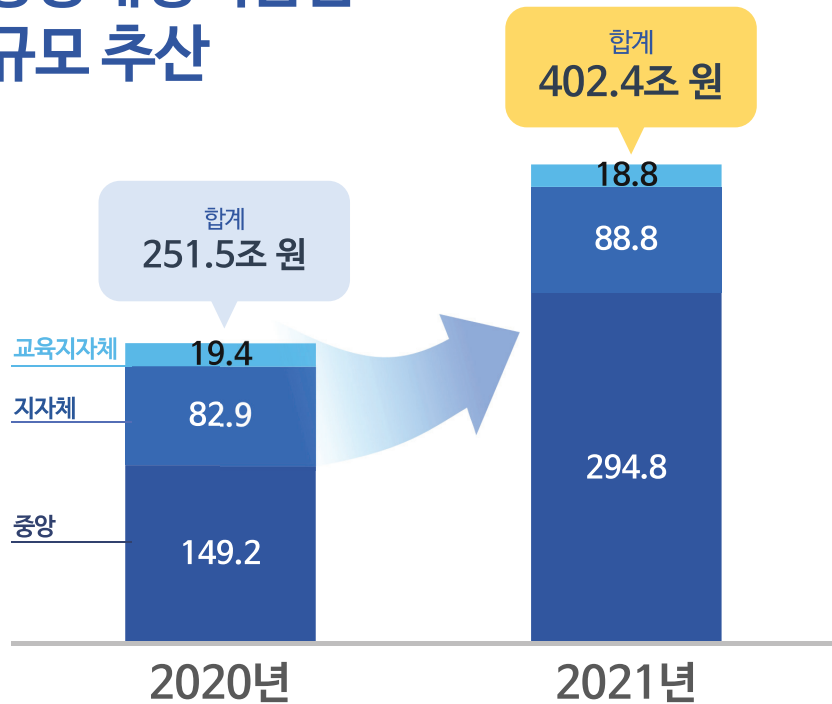


공공재정지급금 추산규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I

법 적용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추산



2021년
공공재정지급금

402.4조 원

전년 대비 약 150조 증가 ↑

국가재정 본예산 기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 포함

법 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실태조사 결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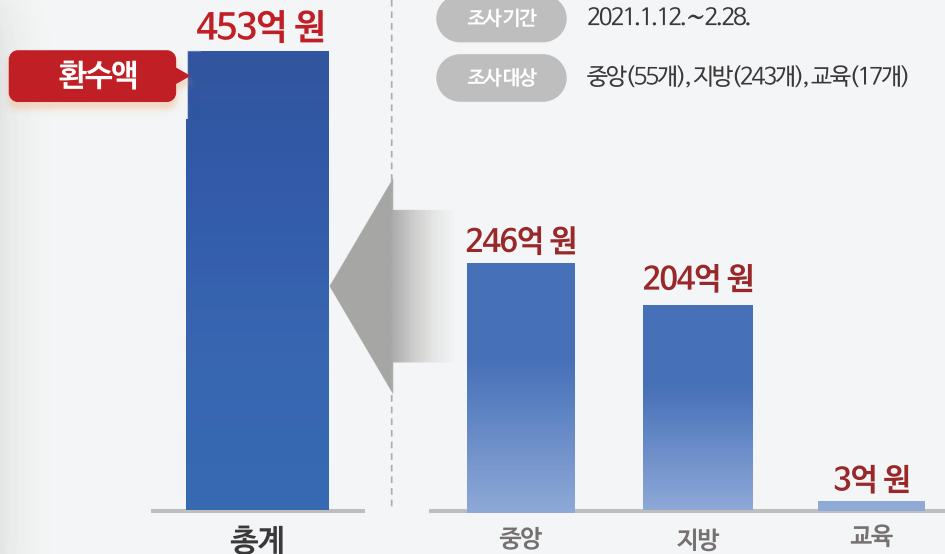
I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후 1년간(2020년) 공공재정지급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 한
공공재정지급금
(2020년)

총 5만3천 여건

총 453억 원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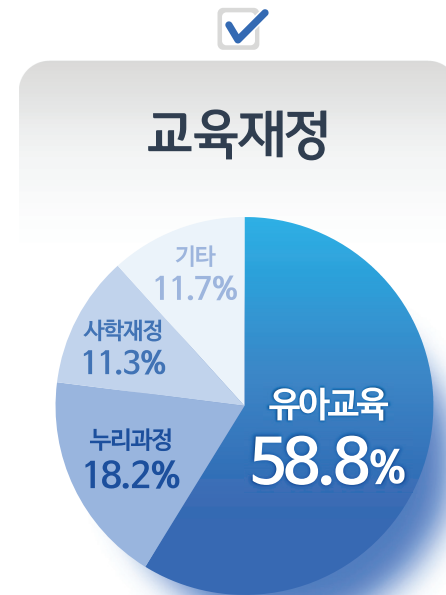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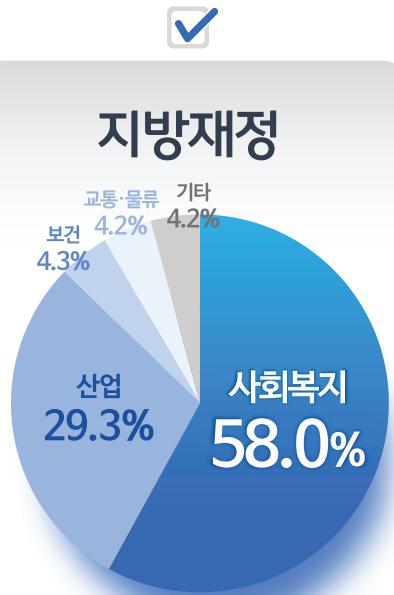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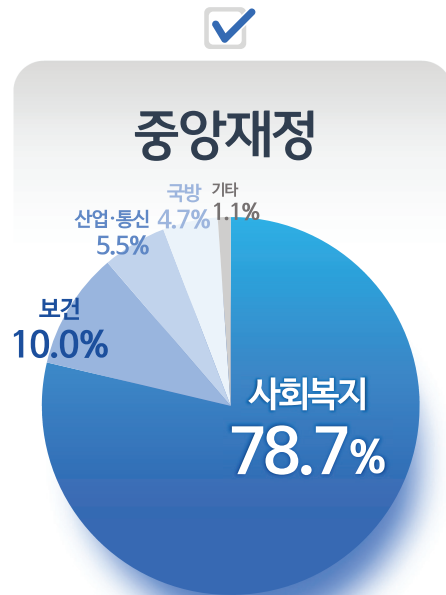


법 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실태조사 결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I

2020년 공공재정지급금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법 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실태조사 결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I

2020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사례

■ 사례1

한 단체는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내용과 다르게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허위청구**



보조금 전액 2천5백만 원 환수조치

1억6백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19년 지방보조금은 제재부가금 미부과

■ 사례2

지방〇〇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 받은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보조금 전액 3천만 원 환수조치

1천5백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20.1.1. 이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II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면?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행위를 신고하면?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0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0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0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0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Q&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2019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 받나요?



NO

아니요,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므로
2019년에 부정수급한 보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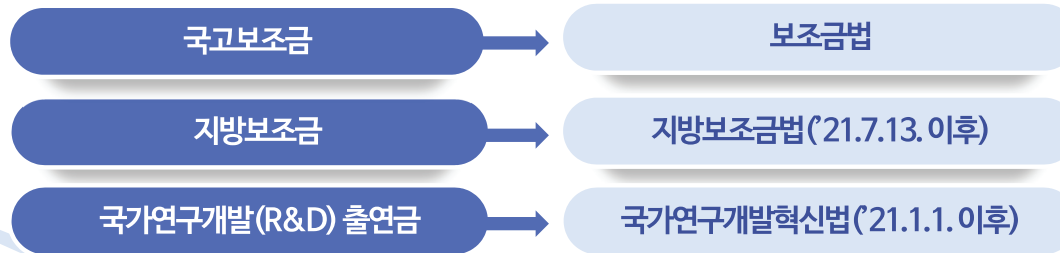


다른 법률 우선 적용



- 01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 02 부정이익등의 환수
- 03 제재부가금 부과
- 04 가산금 및 체납처분
- 05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 06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 07 명단 공표
- 08 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Q&A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 해야 할까요?



**환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정청구등의 신고, 이행실태 점검, 기록관리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Q&A

Q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공공재정환수법」에서도 공공기관으로 보나요?



NO

아니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2조 제5호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훈급여금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중앙행정기관 소관

01	310-01	손실보상금
02	310-03	포상금
03	310-04	기타보전금
04	320-01	민간경상보조
05	320-05	이차보전금
06	320-06	구호 및 교정비
07	320-07	민간자본보조
0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01	301	일반보전금
0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03	303-01	포상금
04	306	출연금
05	307-01	의료 및 구료비
0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0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0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0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01	310-01	보상금
02	310-03	포상금등
03	320-01	민간보조
04	320-07	이차보전금
05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06	340-01	해외경상이전
07	350	출연금
08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9	620-01	인건비지원
10	620-03	목적사업비
11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2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3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4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6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7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18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19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20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21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22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23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_행정안전부훈령)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現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	----------------------

교육자치단체 소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_교육부훈령)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320-01	민간보조	現 320-01 민간경상보조	
		現 320-14 민간자본보조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1	예산과목에서 제외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2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3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4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개편 전 현재('21.10.): 일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소관 예산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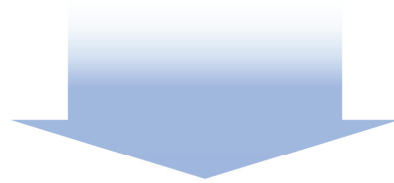
공공재정지급금 범위 Q&A 1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NO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사규)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NO

아니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청과 부정수익자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부정수익자

- 부정이익을 얻은 자
- 국회 등 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

VS

Q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 사업 위탁 근거법에 환수 등 제재처분에 대한 위탁근거는 별도로 없는 상황

YES

예, 공공재정지급금 집행권한을 가질 경우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정수익자 Q&A 2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국·공립학교도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나요?



YES

예,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정의에 따르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가 교육청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부정청구등 하였다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부정청구등 유형

허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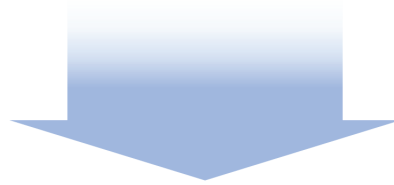
부정청구등 유형 Q&A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어떤 **부정청구등 유형**에 해당하나요?



허위청구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청구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환수
+이자포함

제재부가금
부과
x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법익실효성
확보장치

부정이익등의 환수

법 제8조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환수

지급 중단(법 제7조)

확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환수하는 경우 부정이익 + 이자 환수

불확실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환수금액 산정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환수금액

부정이익 가액

허위청구
제공받은 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목적외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금액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20.1.-'20.2. 연 2.1%
'20.3.-'21.2. 연 1.8%

연 1.2%
'21.3. 현재

이자 계산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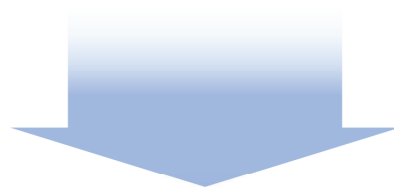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 수

부정이익등의 환수 Q&A 1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행정청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YES

예, 이자를 부과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정이익 가액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상 환수규정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자 부과없이 환수합니다.

부정이익등의 환수 Q&A2

Q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나요?

YES

예,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합니다.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경우 포인트 배정 자체가 아닌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집행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실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자등을 환수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 외에 이자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법 제9조 부정이익(+이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x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x3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x2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

행정청의 과실
100%

환수금액 산정 예시

사례

A가 '20. 2월에 지급받은 보조금 1,000만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A에게 '21. 9월에 환수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A에게 고지한 부정이익등의 환수 금액은 얼마일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20.1.-'20.2. 연2.1% / '20.3.-'21.2. 연1.8% / '21.3. 현재 연1.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부정이익등의
환수 금액

부정이익
10,000,000원



이자
257,500원



제재부가금
20,000,000원



총 납부금액
30,257,500원

이자계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수 (19개월 = '20.2월 ~ '21.8월)

*이자 = 부정이익 가액 × 계산기간(개월수)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 1/12(연리)

⇒ 1,000만원 × 1개월('20.2월) × 0.021 × 1/12 + 1,000만원 × 12개월('20.3월-'21.2월) × 0.018 × 1/12
+ 1,000만원 × 6개월('21.3월-'21.8월) × 0.012 × 1/12 = 17,500원 + 180,000원 + 60,000원 = 257,500원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2조제6호다목, 영 제3조제2항제3호, 별표1 제재부가금(2,000만원) = 부정이익 가액(1,000만원) × 2배(목적외 사용)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 **법 제10조**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 · 면제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사유 **법 제11조**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사실 無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Q&A 1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되나요?



YES

예,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이익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제재부가금의 감면 Q&A 2

Q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YES

예,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Q&A 3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하는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와 유사한 지원금이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이익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 예외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만 제한적으로 인정, 문언적으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환수



제재부가금



참고 서식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관련 예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원
⑤ 이자		원
⑥ 환수금액(④+⑤)		원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⑧ 납부할 금액(⑦+⑥)		원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행위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불응의 날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직상지 80g/㎡]

가산금 및 체납처분

법 제12조

절차



가산금 예시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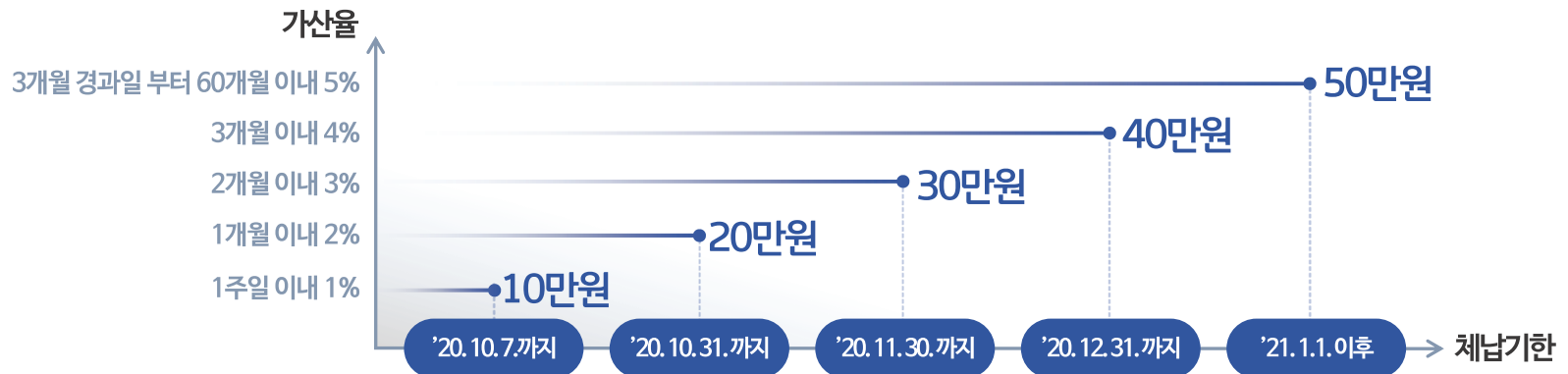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사례

행정청이 A씨에게 고지한 부정이익등의 환수 금액(30,105,000원)에
'20.9.30.까지 납부기한을 주었는데 1,000만원 체납한 경우 가산금 계산은?

법 제12조, 영 제8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3개월 경과일 부터 60개월 이내 5%



참고 서식

독촉장 관련 예시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①	년 월 일까지	원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의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조사 실시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 행정청이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 관련자

-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
-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

조사범위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사무소·
사업장
출입 조사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절차 준용

명단 공표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 3천만원 이상

심의위원회 심의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위원장 행정청의 부기관장
위원 고위공직자 3명 이내,
민간전문가 5명 이내

임기

3년
1차례 연임 가능

소명절차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

* 5일 이상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명단공표

기간

1년간
미납시 계속 공표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내용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는 대표자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참고 서식

명단공표
관련 예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 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추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년 월 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불일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명단공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성)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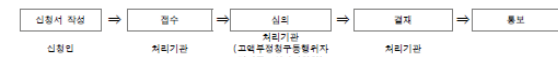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장 귀하

작성방법

소명 내용만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의상지 80g/㎡)

명단 공표 Q&A 1

Q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존에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나요?



YES

예,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심의위원회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단 공표 Q&A 2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등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이익등이 발생한 전 기간에 대한 사항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명단을 2022년 3월에 공표**해야 하나요?



NO

아니요, 법 시행(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합니다.

명단공표의 요건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칙에 따라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25조 행정청은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내역을 기록·관리

참고 서식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예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갱연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채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 처분일

☒ 처분대상자

☒ 처분 사유

☒ 처분 금액 및 납부기한

☒ 명단공표 방법 등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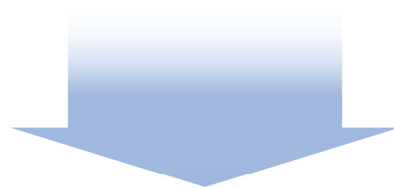
기록·관리 Q&A 1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수 처분한 경우에도
기록·관리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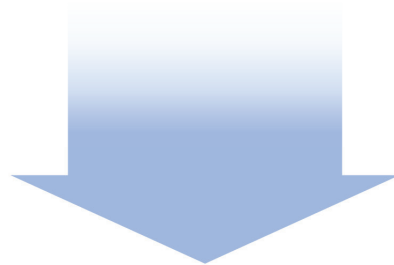


YES

예,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보므로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한 경우에도 기록·관리 해야 합니다.

Q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에서 **환수**가 이뤄진 경우에
기록·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나요?



**처분을 이행한 기관(고지서 발부 등)에서
기록·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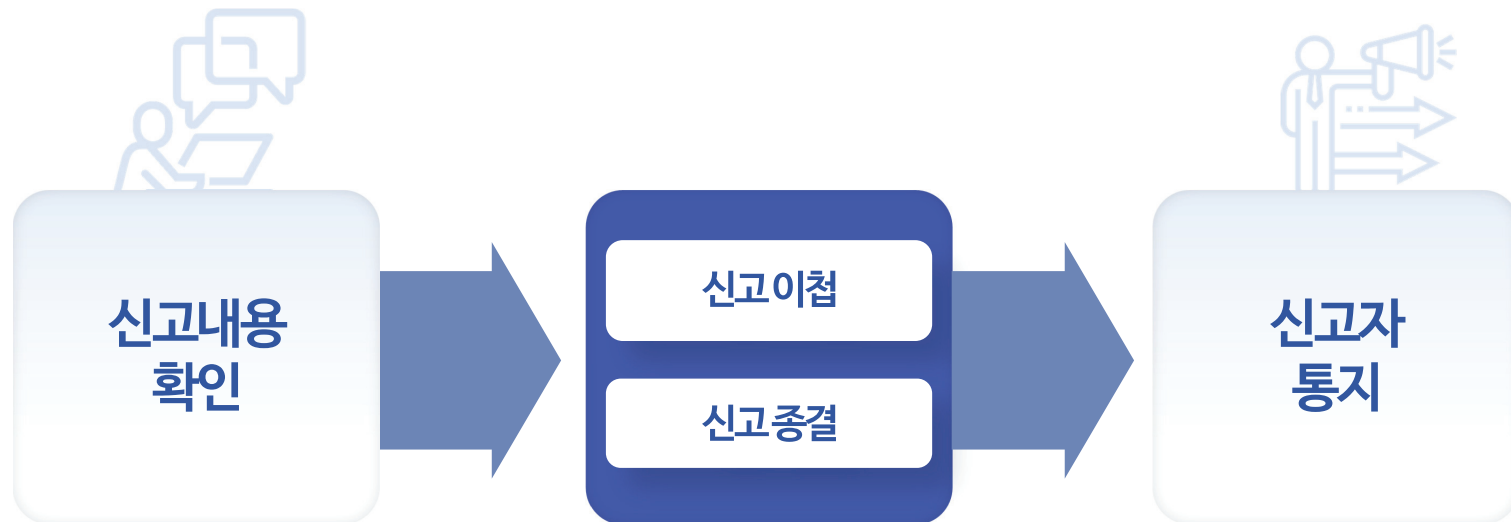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처리 방법·절차 등 준용



부정청구등 신고 Q&A 1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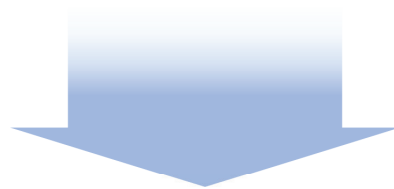


NO

아니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부정청구등 신고를
공직유관단체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나요?



YES

예, 공직유관단체가 소관 공공기관(행정청)일 경우에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Q&A3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YES

예, 허위신고 등 조사·감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항의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법 제20조

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제1항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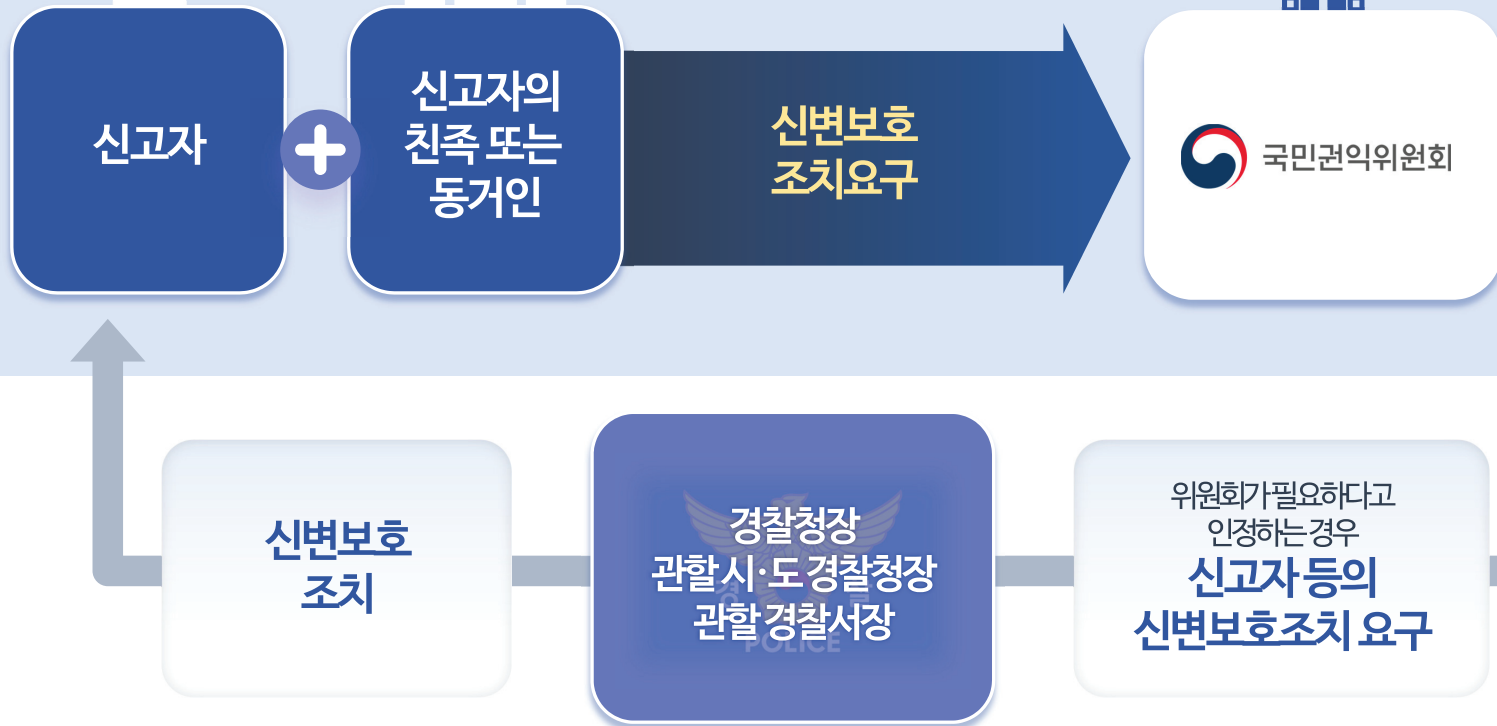
신고자 보호 (신변보호)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법 제22조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형의 감경·면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고자 보호 Q&A 1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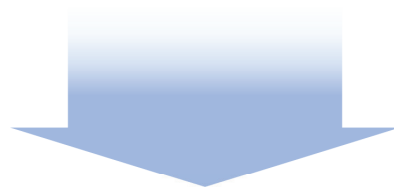
**아니요,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을 알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신고내용만으로도 신고자등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Q

부정청구등 신고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알게 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YES

예,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Q&A 3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YES

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 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포상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지급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한 경우

포상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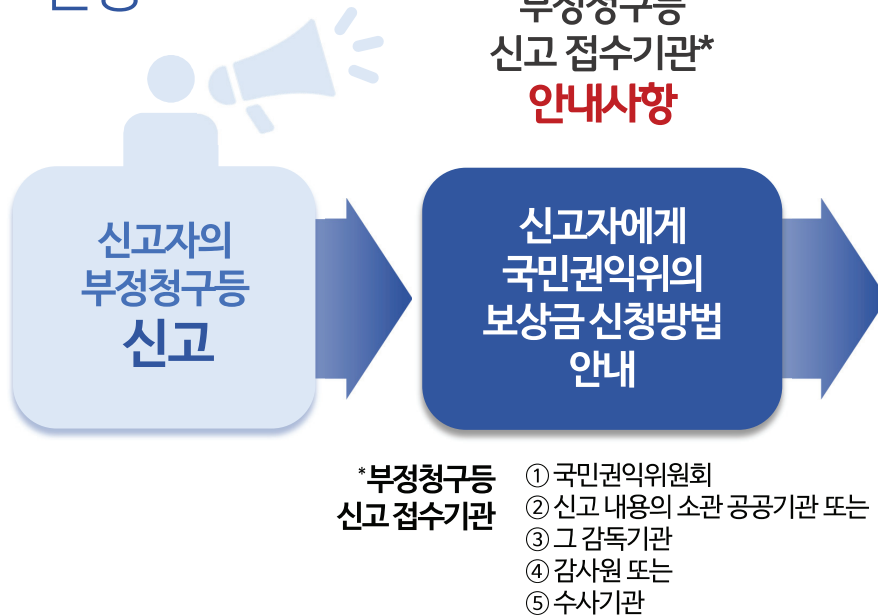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 보상·포상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 “신청 요건 및 상담”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신고자 보상 상담: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신고자 보상·포상

포상금 지급 추천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지급 대상자 추천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가능



추천요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 ③ 그 감독기관
- ④ 감사원 또는
- ⑤ 수사기관

※ 신고자 포상 문의 :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신고자 보상 Q&A 1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보상금은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환수 또는 제재부가금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또는 구제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에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중
어느 기관에 부정청구등 신고를 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③ 그 감독기관 ④ 감사원 또는 ⑤ 수사기관

신고자 보상 Q&A 3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Q 부정청구등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등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부정청구등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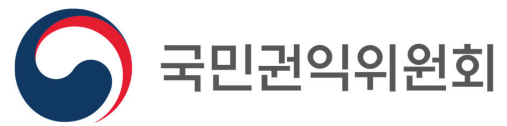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정청구등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는 때에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정청구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II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목 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83	제1조(목적) 83
제2조(정의) 83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85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84
제4조(적용 범위) 8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6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87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87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87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87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89	제4조(환수절차) 88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90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89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90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절차) 89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91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90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9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92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92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92	
제15조(이의신청) 93	제10조(명단 공표) 93
제16조(명단 공표) 93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4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96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97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97	
제19조(신분보장 등) 97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98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98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100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98
제21조(신변보호조치) 101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99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101	제17조(신변보호) 101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102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0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준용규정) 106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103 제20조(보상금의 금액 기준) 103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104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104 제23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104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105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105 제26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105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106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107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107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 106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07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8
제5장 벌칙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109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109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109 제31조(과태료) 109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0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10	부칙 11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기준(제5조 관련) 11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1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9. 4. 16. 법률 제16323호 [시행 2021. 1. 5.]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9호 [시행 2021. 1. 1.] 타법개정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 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를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② 행정청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기관·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의 시기·방법·절차, 소명의 기간·방법·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년간 게시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 공표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다목의 경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같은 호 라목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행정·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전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전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⑦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감사·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법	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①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장에게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요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및 “보상대상가액”은 각각 “포상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보상금의 감액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같은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 회복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 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0조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7. 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벌칙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7881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④9까지 생략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200%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

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인가·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700	
			700	
			500	
			300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III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30.] 일부개정 2020. 7. 30.,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2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항목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10-01 손실보상금
2. 310-03 포상금
3. 310-04 기타보전금
4. 320-01 민간경상보조
5. 320-05 이차보전금
6. 320-06 구호 및 교정비
7. 320-07 민간자본보조

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항목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01 일반보전금
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 303-01 포상금
4. 306 출연금
5. 307-01 의료 및 구료비

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체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다음 항목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10-01 보상금
2. 310-03 포상금등
3. 320-01 민간보조
4. 320-07 이차보전금
5.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6. 340-01 해외경상이전

7. 350 출연금
8.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9. 620-01 인건비지원
10. 620-03 목적사업비
11.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2.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3.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4.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6.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7.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18.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19.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20.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21.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22.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23.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지급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3호, 2020. 7.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별표 1]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

- | | | | |
|----|---------------------------|----|-----------------------------------|
| 1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3 | 경찰법 |
| 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계량에 관한 법률 |
|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4 | 가축전염병 예방법 | 26 | 고등교육법 |
| 5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7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8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 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8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30 | 고용보험법 |
| 9 | 건강가정기본법 | 31 | 고용정책 기본법 |
| 10 | 건강검진기본법 | 3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1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33 | 골재채취법 |
| 1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34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 13 | 건설기술 진흥법 | 3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14 | 건축기본법 | 36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 15 | 건축법 | 37 | 공공외교법 |
| 16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38 | 공공주택 특별법 |
| 1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공동주택관리법 |
| 18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4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9 | 결핵예방법 | 4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20 | 경관법 | 42 | 공인중개사법 |
| 21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43 | 공직선거법 |
| 22 | 경찰관 직무집행법 | 44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 | 45 | 공항시설법 |
| | | 46 | 과학기술기본법 |
| | | 47 | 관광진흥법 |
| | | 48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49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50	광업법	7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51	교육기본법	7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5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79	국민영양관리법
53	교통안전법	8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81	국제선박등록법
5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8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8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7	국가기술자격법	8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58	국가보안법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국가보훈 기본법	86	군사법원법
6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8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2	국가재정법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6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90	군인사법
64	국가표준기본법	9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9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66	국립공원관리공단법	9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6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9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6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9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96	기상법
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97	기상산업진흥법
7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8	기술보증기금법
72	국립해양박물관법	9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7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0	긴급복지지원법
74	국민건강보험법	101	김치산업 진흥법
75	국민건강증진법	102	낙농진흥법
7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03	낙시 관리 및 육성법

104 난민법
 10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0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7 남북협력기금법
 108 내수면어업법
 10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11 노인복지법
 1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13 노후준비 지원법
 1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15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1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1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20 농약관리법
 1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3 농어업재해대책법
 1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25 농어촌정비법
 1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27 농업기계화 촉진법
 12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3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2 농지법
 13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4 다문화가족지원법
 135 대기환경보전법
 1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7 대외무역법
 1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9 대학도서관진흥법
 14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14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6 도로교통법
 147 도로법
 148 도서관법
 1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0 도시개발법
 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5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5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7 도시철도법

15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6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162 독립기념관법
1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4 동물보호법
165 동물위생시험소법
16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6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6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70 말산업 육성법
17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72 모자보건법
17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7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7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7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77 문화재보호기금법
178 문화재보호법
17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0 물류정책기본법
18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2 물환경 보전법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5 발명진흥법
18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8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88 방송법
189 방위사업법
19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91 방조제 관리법
1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9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4 범죄피해자 보호법
19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96 법률구조법
19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98 변호사법
199 병역법
200 보건의료기본법
20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2 보건환경연구원법
2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12 북한인권법
- 213 비료관리법
- 2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2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216 사도법
- 217 사료관리법
- 218 사망사업법
- 2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2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221 사회보장기본법
- 2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2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24 사회복지사업법
- 2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26 사회적기업 육성법
- 22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28 산림기본법
- 2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231 산림보호법
- 2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3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234 산업발전법
- 235 산업안전보건법
- 2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39 산업표준화법
- 24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4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24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24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2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247 석면안전관리법
- 2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49 석탄산업법
- 250 선박안전법
- 2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5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53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25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255 소비자기본법
- 2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57 수도법
- 258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5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26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6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262 수산업협동조합법
- 26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264 수산자원관리법
- 26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26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6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68 숙련기술장려법
 26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70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271 습지보전법
 272 식물방역법
 273 식생활교육지원법
 27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75 식품산업진흥법
 276 식품안전기본법
 277 식품위생법
 278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27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8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83 아동복지법
 284 아동수당법
 28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6 아이돌봄 지원법
 287 암관리법
 2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0 약사법
 291 양곡관리법

292 양성평등기본법
 29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95 어장관리법
 2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9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9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0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2 연안관리법
 303 영유아보육법
 3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05 예비군법
 3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07 외국인투자 촉진법
 308 외무공무원법
 309 외식산업 진흥법
 3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31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312 원양산업발전법
 313 원자력안전법
 314 위생용품 관리법
 3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317 유료도로법
 31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22 의료급여법
 323 의료법
 3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2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327 인삼산업법
 32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3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30 임금채권보장법
 3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32 입양특례법
 333 자동차관리법
 3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337 자연공원법
 338 자연환경보전법
 3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3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4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4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4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4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0 장애인복지법
 351 장애인연금법
 35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5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5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6 재외동포재단법
 35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360 전쟁기념사업회법
 36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전파법
 365 정당법
 366 정보통신공사업법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정부법무공단법
 36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71 정치자금법

372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3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74 제품안전기본법
 375 조경진흥법
 3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77 종자산업법
 378 주거급여법
 379 주거기본법
 38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1 주차장법
 382 주택법
 38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8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86 중소기업기본법
 38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8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92 중재법
 39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9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39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96 지방문화원진흥법
 39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9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39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0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01 지역문화진흥법
 40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03 지역보건법
 40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06 직업안정법
 407 진로교육법
 40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09 철도건설법
 41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412 철도안전법
 41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15 청소년 기본법
 416 청소년 보호법
 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418 청소년활동 진흥법
 419 초지법
 420 최저임금법
 421 축산물 위생관리법
 422 축산법
 42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424 출입국관리법
 4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426 치매관리법
- 42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428 콘텐츠산업 진흥법
- 42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4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431 택지개발촉진법
- 432 통일교육 지원법
- 43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4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3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43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437 평생교육법
- 438 폐기물관리법
- 4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40 하수도법
- 441 하천법
- 44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4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444 학교보건법
- 445 학술진흥법
- 446 한국감정원법
- 447 한국고전번역원법
- 448 한국공항공사법
- 449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4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45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452 한국국방연구원법
- 4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454 한국국제협력단법
- 45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4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45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45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459 한국도로공사법
- 460 한국법학원 육성법
- 46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46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46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46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465 한국석유공사법
- 466 한국수자원공사법
- 46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6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46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47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47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47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473 한국철도공사법
- 47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47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47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47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478 한국환경공단법
- 479 한부모가족지원법

48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2 한의학 육성법
 483 한·아프리카재단법
 484 항공보안법
 485 항공사업법
 486 항공안전법
 487 항로표지법
 488 항만법
 4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1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49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93 해외건설 촉진법
 49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49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49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498 해운법
 49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50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01 혈액관리법
 5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3 형사소송법
 5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5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508 환경보건법
 50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11 희귀질환관리법
 512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51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5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1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51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